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재적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1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서 “재적회원 500명 초과 금고에서 2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제35조 제6항).
-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 임원 선거운동 시 제한행위 및 선거운동방법 규정을 대의원 선거에도 적용함(안 제22조).
- 금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금고 잉여금 중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제5항 및 제35조).
- 중앙회 이사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중앙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4조의2제5항).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업법」상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8조제5항 신설 등).
- 중앙회 및 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처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

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절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앙회의 일부 간부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제1항 단서).
- 일정 규모 이상 금고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안 제76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등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0조의2 신설 등).
-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84조).
- 금고 임원의 선거운동 시 제한행위 위반범죄 자수자 특례 규정을 정비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대상자에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등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은 제외함(안 제87조제1항).

II. 검토의견

1.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 참여 근거 마련에 대한 금융위의견 등 감안 필요(안 제68조제5항 및 제85조제2항제11호)

- 안 제68조제5항 및 제85조제2항제11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기존 방식을 간소화하여 의료기관 등이 보험회사에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제5항 및 제85조제2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중앙회”로 보고, 제102조의6제1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로 보며, 제102조의7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로 본다.
제85조(벌칙)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85조(벌칙) ② -----임직원, 청산인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에 따른 업무관련자(제1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경우

- 그런데 해당 규정은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이고, 실손의료공제계약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침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준용방식으로 입

법화하기보다는 법에 직접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¹⁾).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해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의 명확성 차원에서 준용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침익적 성격을 갖는 입법의 경우 준용방식으로 규정하면 무엇이 금지되거나 요구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25, pp. 225~226

- 이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안 제68조제5항 및 제85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안 제68조제5항 및 제85조제2항제1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청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중앙회”로 보고, 제102조의6제1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로 보며, 제102조의7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로 본다.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85조(벌칙)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85조(벌칙) ② ----- 임직원, 청산인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에 따른 업무관련자(제1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경우	제85조(벌칙) ② -----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 ----- ----- -----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2. 일정 규모 이상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규정 정비(안 제76조제3항 단서)

- 안 제76조제3항 단서는 주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의무를 법률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구체적인 명령에 의해서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외부감사 수감의무의 이행 확보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현행법 제76조제1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연 1회 이상 회계연도 외부감사 수감의무는 주무부장관의 명령 없이 해당 법 조항에 의해 바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부칙 제12조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76조제3항 단서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주무부장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주무부장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제3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주무부장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삭제>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조(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 상근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명확화(안 부칙 제18조)

- 안 제18조제3항은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되, 안 부칙 제18조에

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비상근감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그런데 금고에는 현행법 제18조제1항²⁾에 따라 3명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어서, 비상근감사를 2명 또는 3명 두고 있는 금고들이 있는데, 이 경우 비상근감사의 임기가 다르면, 언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임기만료일이 가장 늦은 비상근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상근감사를 두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상근감사의 도입이 늦어지게 됨.

이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해당 경과조치는 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비상근감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만 적용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안 부칙 제18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
부칙 제18조(상근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 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조(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감사의 임기를 말한다) 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미한 자구 수정 반영

2)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4.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 시행일 본문에 규정된 시행일과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을 각각 “이 법 시행일” 및 “개정 규정 시행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